

'95년도 설비공사 관련 시중노임 단가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임단가 기준이 올해부터 정부가 인정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재무부장관이 결정, 고시(정부고시노임)한 노임단가의 적용을, 올해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노임단가를 반영토록 하므로써 건설업계의 현실화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에 의하되, 동 가격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1

통계작성 승인기관의 시중노임조사, 공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은 현재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등으로서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부문(광, 전자통신, 문화재 및 원자력부문 포함) 시중노임을 년 2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일간건설」, 「거래가격」 및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조부문 시중노임을 년 1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중소기업신문」 및 「직종별 임금보고서」에 게재하고 또한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도 동시중노임을 게재하게 된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시중노임단가(공사 및 제조부문)의 적용시 참고할 사항

① 동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동 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③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일부년도(또는 시기)에 있어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3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전년도 이전에 계약체결되어 당해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공사등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동 규칙 동 조 제1항중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또는 동 조 제2항의 “지수등의 변동”과 관련되는 물가 변동시점의 노무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동 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에 의한 조정방법

* '94년 이전에 계약 체결을 했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시중노임증가율)
 ※ 단,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시중노임증가율)

* '95년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년도의 당해직종별 시중노임단가
 ※ 단, 계약체결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중노임을 가감 적용할 경우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시중노임증가율)

② 동 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노임단가 평균치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시중 노임증가율)
 ※ 단,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의 전체직종의 노임단가 평균치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시중 노임 증가율)

* '95년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년도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③ 기사사항

위 식중 '94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의 당해 직종의 노임단가” 및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의 전체

직종의 노임단가 평균치”는 재무부 회제 45110-144('93.2.8)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 세부적용 요령 시달” 및 회제 45101-37('93.1.2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기준단가 적용 요령 시달”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4년도 9월 설비주요직종 노임분석

직 종 명	조사노임	'94정부노임	인상률(%)
배 관 공	42,008	34,400	22
용 접 공	51,895	39,500	31
위 생 공	42,960	33,900	27
보 온 공	43,313	30,900	40
닥 트 공	51,895	31,400	65
기 계 설 치 공	49,313	34,000	45
보 일 러 공	46,595	34,700	34
플랜트기계설치공	61,934	41,900	48
플랜트배관공	55,703	41,600	34
플랜트용접공	61,357	43,200	42
플랜트제관공	51,591	40,300	28
플랜트특수용접공	63,933	49,700	28
평 균	51,874	37,958	37

1. 조사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근무시간 기준이므로 실제노임단가와와는 차이가 있다.
 [보 기] 08:00에 출근하여 18시에 종료하는 현장의 경우는 1일 9시간 근무하는 배관공, 용접공의 경우 건설협회 조사노임기준으로는 배관공은 49,884원 용접공은 61,625원이다.
2. 설비관련직종(12개 직종) 평균조사노임은 51,874원이며 16.5% 인상되었고 공사직종 평균조사노임은 51,702이며 93년대비 6.4% 인상되었다.
3. '95년도 정부노임 적용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노임단가에서 공사현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15%를 가감하여 적용함(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
4. 건설협회 조사노임은 1,020개 현장을 조사하여 나온 결과이다.